

태풍으로 인한 다발 사고유형의 배상책임 인정기준(안)

4

■ 대표 사고유형별 배상책임 인정여부 및 책임비율

['10.09.03
손사기획]

유형	배상책임 인정여부 체크 포인트	책임비율
아파트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충분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거나 차니가던 행인을 상해케 한 사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창문 공작물의 부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했는지 ○ 창문의 설치 또는 구조상의 결함은 있는지 (신규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·제조업체에 대한 구상검토) ○ 차량이 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하였는지 아니면 틀법주차 상태였는지 ○ 창문 파손의 우려를 예전할 수 있었는지 ○ 태풍에 대비한 안전 조치는 무엇을 하였는지 ○ 인근 다른 지역의 유리창도 대부분 파손된 상황인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근 다른 건물의 유리창도 대부분 파손된 경우이고, 기본적인 주의조차를 하였더라도 사고 발생이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자 책임없음
일반 시설물이나 금속물이 파손되면서 대인 또는 대물 피해를 입힌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속물 소유 또는 점유자로서 태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하였는지 ○ 제3자가 보더라도 안전조치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○ 별도의 시설물 위탁 관리 업체가 있는지 (구상검토) ○ 정부 또는 자자체와의 금품불법행위 성립 여부 검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태풍이라는 자연적 기여 부분을 70%로 하 고 가해자 책임을 30~40%로 세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에는 가해자 외 책임 50%~60%로 인정

■ 과거 태풍관련 배상책임 유형 및 사례

사례	책임인정 근거	책임비율
청소대행업자 가동 쓰레기 매립작업을 하였는데, 대풍 "설마"로 집중호우가 내려 쓰레기가 인근 포도밭으로 유입되어 손해를 입힌 사고 (부산고등법원 89나5386)	<p>장마철 폭우에 대비하여 매립된 쓰레기가 인근 농토에 유입되자 않도록 아파트먼트 관리업체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쓰레기를 적치함</p>	<p>포도밭의 피해는 일차적으로 태풍으로 인한 것인지만, 청소대행업체의 책임이 있어야 손해가 확대됨 (30% 인정)</p>

<p>태풍 "프란체"로 영향으로 가파 유리창이 깨어진 일 없는데, 유독 둑에 건물에 소재하고 있는 카페의 유리창만이 앞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의 머리에 부딪혀 상해를 입힌 사고(서울지법 2002가합10412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접한 다른 건물의 유리창은 위 사고 당일 바람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일이 없는데, 유독 둑에 건물에 소재하고 있는 카페의 유리창만이 깨어진 일이 이상 위 카페 유리창에는 공작물로서의 하자가 있음. ○ 카페 주인은 같은 날 30분 전에도 유리창이 깨어져 건물앞 도로에 떨어진 일이 있었음에도 간판업자에 유리창을 떼어달라는 부탁만 하였을 뿐 그 외에 다른 안전조치나 건물앞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 	<p>태풍이라는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자연력과 공작물의 하자 및 카페자의 과실행위가 결합되어 발생한 경우로서 카페자의 책임비율은 60%로 인정</p>
<p>렌선 옆 담장에 주차된 차량이 태풍으로 인하여 담장이 무너져면서 피해를 입은 사고 (부산지방법원 2008나4817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○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의 관리를 위임하지 않는 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보수 등의 필요한 철거를 취할 의무있음 ○ 태풍으로 인하여 주변시내의 모든 담장이 무너졌거나 다른 건축물들이 모두 붕괴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 담장은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됨 	<p>피해자로서도 과거 참고 구조물이 2년 전 태풍에 의해 파손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, 마찬가지로 방송을 통해 태풍에 대비하여 한다는 내용을 들었는 바. 이에 대비하여 본 구조물이 다시 붕괴 될 우려가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 참고 관리자측의 책임을 60%로 제한함</p>
<p>태풍 "루사"로 풍우가 내리면서 땅의 땅으로 순간적으로 유품이 증가해 주변 주택이 파괴되고 침수된 사고에 있어서 땅을 관리하는 한국수력 원자력(주)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(서울중앙지법 2003가합49042)</p>	<p>태풍 "루사"로 풍우가 내리면서 땅의 땅으로 순간적으로 유품이 증가해 주변 주택이 파괴되고 침수된 사고에 있어서 땅을 관리하는 한국수력 원자력(주)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(서울중앙지법 2003가합49042)</p>	<p>땅을 관리하는 한국원은 태풍으로 인한 강우로 땅의 물을 방류하여 관련 자체의 책임책임부 및 주민들에게 땅의 사설을 통보함으로써 악무를 이해했음을 인정할 수 있고, 그 외에 악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통장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은 없음</p>